

#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 한국항공대학교

##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5.10.28.		16		
2	2019.01.07.		17		
3	2019.12.27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3조제2항에 의한 5년제 및 5.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7.>

**제2조(모집학과 및 인원)** 모집인원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30%범위 내에서 모집한다.

**제3조(지원자격 및 신청)** ① 연계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학사학위과정 5,6학기 또는 7학기 재학생으로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개정 2019.1.7.>

2.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소정양식의 지원서를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출서류)** 연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서(소정양식) 1부

2. 학부(과)장 추천서(소정양식) 1부

3. 성적증명서(학사학위과정 4,5학기 또는 6학기까지의 성적 포함) 1부 <개정 2019.1.7.>

4.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된 추가서류 <신설 2019.1.7.>

**제5조(전형방법)** 연계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진행한다.<개정 2019.12.27>

**제6조(수업연한)** ①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 또는 5.5년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7.>

1. 학사학위과정은 3.5년 또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19.1.7.>

2. 석사학위과정은 1.5년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4년을 초과한 자는 연계과정의 중도포기자로 간주한다. <개정 2019.1.7.>

**제7조(수강신청)**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학부(과)장의 수강지도를 받아 해당 대학원 전공과목 중 6학점까지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2. 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대학원 과목의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졸업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나 학사학위과정 졸업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취득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격을 가진다.

1. 학사학위

가. 학사학위과정에 7학기 또는 8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필한 자 <개정 2019.1.7.>

나. 교과학점 124학점을 취득하고, 성적이 3.5이상이며, 기타 학사과정의 졸업요

건을 충족한 자 <개정 2015.10.28.>

- 다. 대학원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대학원 과목을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라. 학부 졸업 시 대학원 입학 등록을 필한 자

## 2. 석사학위

- 가. 석사학위과정에서 소정의 교과학점(학사학위과정에 취득한 6학점 포함) 과 연구지도학점을 취득한 자로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9.12.27>
- 나. 석사학위과정에 3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 다.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서 합격 판정된 자

**제9조(등록 및 취소)** ①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해당 대학원에 신입생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에게 「일반대학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③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학부 졸업이 인정되지 않고 연계과정의 중도포기로 간주되며, 학사학위 졸업학점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8., 2019.1.7.>

④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군 입대, 병가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 후 3학기 내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1학점 당 해당 학기 수업료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제10조(행정절차 및 사무분장)** 연계과정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부서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행정실 : 지원서 접수, 입학전형 진행, 최종합격자 명단 통보, 대학원 개설과목 취득 학점 관리, 석사학위과정 등록 확인, 기타 석사학위과정에서의 학사관리 일체
2. 교무팀 : 중도포기 및 학부졸업에 따른 학사관리, 기타 석사학위과정에서의 학사관리 일체 <개정 2019.1.7.>
3. 대학 및 학부(과) :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매 학기 수강신청을 비롯한 학생들의 학사 지도

**제11조(준용)** 이 내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며,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학부 졸업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 내규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9조 제3항

의 개정내용은 학부 2013학번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2학기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